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

2018년 12월 17일 교 육 위 원 회

Ⅰ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8년 10월 12일, 채유미 의원

2.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29일

3. 상정일자

○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(2018년 12월 17일 상정·수정가결)

Ⅱ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채유미 의원)

1. 제안이유

○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이 필요함.

따라서 학생자치활동이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실천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나. 학생자치활동 지원계획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다. 학생자치열등이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위원회를 설치함(안 제5조~제7조).
- 라. 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(안 제8조)
- 마. 우수학교, 우수교원 등에 대한 표창(안 제9조)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18년 10월 12일 채유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54 호로 발의되어 2018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17조에 따라 권장·보호되는 학생자치 활동에 대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되 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학생자치활동 현황 및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

○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¹⁾ 따라 권장· 보호되는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급회, 동아리, 학생자치

^{1) 「}초·중등교육법」

제17조(학생자치활동)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·보호되며,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
[「]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₁

제30조(학생자치활동의 보장)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・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회 등 학교 내·외의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교육활동과 의사결정에 주체 적으로 참여하는 집단 활동으로서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함양 해 나가는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학생자치활동은 「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」제18조에 따라 학생인권의 내용으로 보장되고 있고²)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9조에³)따라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,

서울특별시교육청도 매년 「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계획」(부제: '교복 입은 시민' 프로젝트 2.0)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○ 이와 같이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자치를 기본원리로 하여 각종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봉사활동, 진로탐색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 학생이 자율

^{2) 「}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」

제18조(자치활동의 권리) ① 학생은 동아리,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, 소집, 운영,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,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,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, 평등, 직접,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.

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^{1.}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,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

^{2.} 학교운영,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

^{3.}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

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^{1.}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

^{2.} 학생총회,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

^{3.} 납부금 징수, 성금 모금, 학교생활,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

^{4.}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사·의결할 수 있는 권리

^{5.}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

^{6.} 다른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

^{7.}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

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·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,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, 소명기회의 보장,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.

^{3) 「}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

제9조(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)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(이하 "학칙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^{1. ~ 7. (}생략)

^{8.}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

^{9. ~ 10. (}생략)

적이고 자주적으로 참여하며, 그 의사결정과 합의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○ 그러나 아래 [그림]과 같이 학생회실 확보 및 운영, 학생회 개최 수 등이 증가하는 성과도 있으나, 안전교육, 학교폭력예방교육, 성교육 등 필수 적응교육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자치활동 시간을 확보하기 곤란한 형편이고,⁴) 현행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단순히 규칙마련의 근거만 제시하고 있어 구체성이 미흡한 상황입니다.

[그림] 2017학년도 학생자치활동 추진 결과



^{4) 「2018}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계획」(부제: '교복 입은 시민' 프로젝트 2.0) 8p, 참고.

또한 학생회 선거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'스펙 쌓기'로 인식되어 학생자치활동의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, 학생회의 역할도 학교축제와 수동적 캠페인(교육부-교육청-학교장 등의 지시) 등의 이벤트 중심으로 치우치는 등 역할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.5)

○ 따라서 동 조례안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학생자치활동이 체계적으로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교육영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, 학생자치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나.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

○ 동 조례안은 목적, 정의, 책무(안 제1조~제3조)의 총칙 규정을 비롯하여 안 제4조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,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학생자치활동 지원위원회의 설치, 기능, 구성 그리고 안 제8조 연수 등의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특히, 안 제4조제2항은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 지정 및 교원역량 제고 방안, 전년도 학생자치활동 운영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을 계획에 포함토록 하여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는 등 학생자치활동의 체계적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다만 안 제5조 '학생자치활동 지원위원회'의 경우 단서에서 동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존 위원회가 있으면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 현재 학생자치활동은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제2조제19호의 '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'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

⁵⁾ 서울신문, "스펙 쌓으려" 초중고 선거 열기... "스펙 쌓느라" 대학가 선거 냉기, 2015.3.16.; 노컷뉴스, 여고생의 자퇴 '학생회장 꿈 접고 검정고시 택한 이유', 2017.9.26.

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또한 안 제7조의 '학생자치활동 지원위원회' 구성과 관련해서 제1항에서는 위원회 총 인원을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3항 각호에서는 위원회 구성원별 인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, 특정 구성원이 편중되는 등 위원회 구성의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성원별 세부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규칙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

그 밖에 사항과 관련해서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체계성, 조문별 내용의 일관성 등에 있어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

다. 서울특별시교육청 의견에 대한 검토

○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 먼저 안 제2조 정의에 대해 학교 외의 학생활동까지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학교 활동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 -11273, 2018.11.12.).

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「학생자치활동의 이해」(민주시민교육과)에 따르면 학생 자치의 의미를 '학교 내 외에서 학생의 자주적인 의사결정과 합의에 의한 모든 학생활동'으로 명시하고 있고, 경기도교육청의 「참소나무 학생자치활동 매뉴얼」의 경우에도 학생자치활동의 개념을 '학생 개인이 학급회, 동아리, 학생자치회 등 학교 내 외의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교육활동과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활동'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볼 때 그 정의를 학교 활동으로 한정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○ 다음으로 안 제3조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책무 중 '운영 매뉴얼' 수립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'학생자치활동은 정형화된 매뉴 얼을 작성하기 힘들고 교육청은 그 활동을 운영하기보다 지원하는 것 이 타당'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.

그러나 교육부의 「2019년도 민주시민 및 체육 예술교육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지원계획」 (2018.9)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25억원을 편성하면서 전국단위 공동사업으로 학생자치활동 매뉴얼의 개발 보급 및 학생자치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컨퍼런스 구성 예산으로 6천 8백만원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(세부계획은 시 도교육청 의견수렵 후 12월 중 수립 예정이라 함).

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「참소나무 학생자치활동 매뉴얼」을 개발·보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밝힌바와 같이 매뉴얼 제작이 힘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그 밖에 안 제7조제1항의 지원위원회 위원 수의 조정(15명 → 10명)과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'대학교수 및 청소년지도사 등의 외부전문가'를 '외부전문가 등'으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는바, 이러한 수정의 구체적인 실익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V. 토론요지: 생략.

Ⅵ. 수정안의 요지 :

○ 학생자치활동 지원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하고, 위원자격을 포괄적 으로 규정함.

Ⅲ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₩ 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154 제안연월일 : 2018년 12월 17일

제 안 자: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학생자치활동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원수를 조정하고, 위원 자격을 특정함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.

Ⅱ. 주요내용

○ 학생자치활동 지원위원회의 인원수와 자격요건을 수정함(안 제7조제 1항 및 제3항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1항 중 "15명"을 "10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"대학교수 및 청소년지도사 등의"를 삭제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정안
제7조(지원위원회의 구성) ① 지원위원회는	제7조(지원위원회의 구성) ① 지원위원회는
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15</u> 명 이내의 위원으	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10</u> 명 이내의 위원으
로 구성한다.	로 구성한다.
② (생략)	② (원안과 같음)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	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
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	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1. ~ 3. (생략)	1. ~ 3. (원안과 같음)
4.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	4.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
식과 식견을 갖춘 대학 교수 및 청소년	식과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
지도사 등의 외부전문가	
5. (생략)	5. (원안과 같음)
④ ~ ⑦ (생략)	④ ~ ⑦ (원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학생자치활동" 이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집단 활동으로 학급회, 동아리 등 특정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학생 스스로 학교 내·외의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고양하고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- 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 이라 한다)은 학생자 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교육 등을 위해 행·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고 우수운영사례를 발굴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.
 - ③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자치활 동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.
- 제4조(계획의 수립)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
 - 2.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 지정 및 교원역량 제고 방안
 - 3. 전년도 학생자치활동 운영 현황과 문제점, 개선 방안
 - 4. 핵심 과제별 추진 로드맵
 - 5.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

는 사항

- 제5조(학생자치활동 지원위원회의 설치)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학생자치활동 지원위원회(이하 "지원위원회"라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기존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가 제6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가 지원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.
- 제6조(지원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감에게 자문한다.
 - 1.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
 - 2.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
 - 3. 학생자치활동 운영 성과와 과제
 - 4. 학생자치활동의 학교 교육과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
 - 5. 그 밖에 학생자치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
- 제7조(지원위원회의 구성)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
 - 2.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전담부서의 장
 - 3.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학부모 및 교원
 - 4.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
 - 5.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
 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- 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 다.

- ⑥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교육감은 위촉위원의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8조(연수)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담당교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, 학부모,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,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9조(표창)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이 우수한 학교나 교원, 학생회나 동아리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.
- 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